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사업주가 납부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고, 이를 통지받은 사업주가 변제금을 미납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1137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변제금의 납부 기한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변제금의 납부 기한은 그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로 하는 한편, 미납된 변제금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국세채납처분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3. ~ 4.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변제금의 납부통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변제금(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의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금의 금액과 납부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② 변제금의 납부 기한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의3(변제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 등) 변제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 공매대행 절차, 납부의무 승계, 결손처분 및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6, 제41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변제금”으로,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24조제2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통지

2의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

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

제25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 현황

부 칙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변제금의 납부통지) ①</u> <u>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u> <u>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u> <u>변제금(이하 “변제금”이라 한</u> <u>다)의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에</u> <u>는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부터 15</u> <u>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u> <u>하는 바에 따라 변제금의 금액</u> <u>과 납부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한</u> <u>다.</u> <u>② 변제금의 납부 기한은 제1항</u> <u>에 따른 납부통지일부터 20일</u> <u>이내로 한다.</u>
<u><신 설></u>	<u>제11조의3(변제금에 대한 연체금</u> <u>의 징수 등) 변제금에 대한 연</u> <u>체금의 징수, 공매대행 절차, 납</u> <u>부의무 승계, 결손처분 및 서류</u> <u>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고용</u> <u>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u> <u>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u> <u>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u> <u>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u> <u>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u> <u>의2, 제40조의3, 제40조의6, 제41</u>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 2. (생략)

<신설>

<신설>

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변제금”으로,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통지

2의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u>납부기한 전 징수</u> <u>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u> <u>28조에 따른 징수금의 체</u> <u>납처분 등</u> <u>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u> <u>28조의3제4항에 따른 상속</u> <u>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u> <u>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u> <u>29조에 따른 징수금의 결</u> <u>산처분</u>
3. ~ 11. (생략)	3. ~ 11.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공단의 보고) 법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 공단은 매월 다음 각 호의 현황 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5조(공단의 보고)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신설></u>	<u>2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변제</u> <u>금의 징수 현황</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연 락 처	(044) 202 - 7072